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1.18.)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신설(별표2)
 - 1)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 나.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반영한 법령상 용어 정비
 - 1) 도(道)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표기(제16조, 별표 1~4, 별표 6)
 - 2)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 3) 세종·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
- * (기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6항 후단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도”를 “도·특별자치도”로 하고,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국·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정

별표 제3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기관명란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비고 제2호 중 “광역시·도”를 각각 “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직급기준

구분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정무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별표 4 제2호 구분란 중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를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구분란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비고 제3호 “광역시·도”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비고 제3의2호 “광역시·도” 및 “별표2 제1호”를 각각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별표2 제2호”로 한다.

별표6 제2호 구분란 중 “도의 출장소”를 “도·특별자치도의 출장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실·국·본부의 수		구분	실·국·본부의 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도 · 특 별 자 치 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비고			비고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국·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국·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현행					개정안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제10조 제1항 관련)					1. (현행과 동일)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충청북도 전라북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본청의 담당관·과장(제10조제1항 관련)					2. (현행과 동일)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충청북도 전라북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전북특별자치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3. 직속기관					3. 직속기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 (현행과 동일)				
기관명	장	과장	교수요원		기관명	장	과장	교수요원	
광역시·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광역시·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별자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비고</p> <p>2.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장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시·도에 교육훈련기관을 광역시·도 본청의 과 단위 규모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각각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청 담당관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4. 합의제행정기관</p> <p>5.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직급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감사위원 장</th> <th>사무국장</th> </tr> </thead> <tbody>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정무직 지방공무원</td> <td>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td> </tr> <tr> <td>강원특별자치도</td> <td>정무직 지방공무원</td> <td>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td> </tr> </tbody> </table> <p>6. 세종특별자치시 읍장·면장·동장의 직급기준</p>	구분	감사위원 장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p>비고</p> <p>2. -----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 광역시·도·특별자치도 -----</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동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감사위원 장</th> <th>사무국장</th> </tr> </thead> <tbody>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정무직 지방공무원</td> <td>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td> </tr> <tr> <td>강원특별자치도</td> <td>정무직 지방공무원</td> <td>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td> </tr> </tbody> </table> <p>6. (현행과 같음)</p>	구분	감사위원 장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구분	감사위원 장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구분	감사위원 장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2. (현행과 동일)		
	구분	의회사무처 장	과장 또는 담당관	구분	의회사무처 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 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도	서울 특별시	(현행과 같 음)
	부산 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 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자치 시 및 도·특별 자치도	

【별표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1. (현행과 같음)			
	구분	장의 직급	부 장	과장 또는 담당관	구분	장의 직 급	부 장	과장 또는 담당 관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지 역 본 부	2급		4급	광 역 시 · 특 별 자 치 시 · 도	지 역 본 부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사 업 본 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 업 본 부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사 업 소	4급 또는 5급		5급		사 업 소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7